

영등포구의회
제19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
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0. 1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84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현행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 제목 변경 (안 제4조)
- 나. 강사의 위촉 해제 신설(안 제8조의2)
- 다.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라. 예술단체 운영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마. 문래예술창작촌 창작활동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바. 문화·생활체육 행사명 및 단체명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보조금 관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제2항 별표1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추가로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, 문래예술 창작촌 창작 활동 사업, 예술단체(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)운영 사업을 신설하였는 바, 이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“법”의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,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, 아울러 기존에 예산 지원¹⁾을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예산 추계는 필요하지 않음.

1) 2015년도 예산지원 현황

사 업 명	지 원 금 액
계	6,100만원
태권도 시범운영 사업	3,000만원
문화예술 창작촌 사업	2,800만원
예술단체 운영 사업	300만원

- 다만,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대상, 범위, 방법 및 지원내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, 이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조례개정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 중요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입법기술이 요구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